

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① 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영업소 소재지		전화번호	

변경등록 신청내용	② 처음 등록된 내용	③ 변경하려는 내용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
	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

관련법규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
<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>
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
 2.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
 3.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

작성요령

-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을 변경등록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 대표자)의 성명을 적으십시오.
②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처음의 등록내용을 적으십시오.
③란에는 ②란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.

유의사항

- 변경등록 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4항 및 제5항).
○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).

처리절차

